

반대표자 선거시행세칙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1장 총칙

제1조 (선거의 원칙)

선거는 前대 반대표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간호대학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제2조 (목적)

간호대학 반대표자 선거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반 활동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 본 세칙은 간호대학 학년 별 각 반 대표자와 부대표자 선거 (이하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반선거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본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피선거권)

반 대표 입후보자는 간호대학 각 반 재학생으로 한다.

3장 선거

제6조 (선거일)

- 선거는 매 학기 말에 실시한다.
- 선거일은 각반 반대표가 결정한다. 단, 최소 3일전에 반 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간호대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
- 회원이 아닌 자
- 8조 1항, 8조 2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9조 (총칙)

유세는 개인유세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다.

제10조 (개인유세)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로 국한한다.

4장 반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 (위상)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것을 간호대학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2조 (목적)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 ①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②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③ 세칙과 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반선관위)가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반 대표 입후보자에게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④ 반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 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

제14조 (구성)

- ①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각 반 학우 2인으로 지정한다.
- ② 반선거관리위원장은 간호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맡는다.
- ③ 신입생 첫 학기 선거의 경우, 간운위의 의논을 거친 본 회원 2인으로 지정한다.

5장 투표

제15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반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선관위가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징계의 방법)

- 1) 징계는 경고로 한다.
- 2) 경고의 결정은 반선관위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 3) 반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를 준다.

제17조 (징계의 통보)

- 1) 경고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해당 후보가 속한 단위에 사유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 경고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경고 1회를 준다.
- 3) 경고 3회 누적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6장 투표

제1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① 투표는 선거가 일어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반선관위 위원에 정한다.

제19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 ① 투표용지는 반선관위 위원에 제작한다.
- ② 투표용지는 간운위에서 정한 워터마크가 기입된 용지를 사용하며 일련번호를 우측하단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절차)

선거권자와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용지 배부
- 나) 투표

7장 개표

제21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반선관위 위원에 결정, 공고한다.

제22조 (통칙)

- ① 개표는 반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 ②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반선관위 위원에 정한다.

제23조 (개표장)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각 반선관위 위원에 책임아래 수행한다.

제24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인 수 공고
- 나) 투표함 개봉
- 다) 개표
- 라)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마)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바) 현황판에 기재

제25조 (무효투표)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가)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나) 둘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경우
- 다) 후보자 이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라) 후보자 이름 이외의 것을 기입한 경우
- 마)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반선관위 위원에 결정한다.

바) 지정된 위치에 일련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투표용지

제26조 (효력)

- ① 투표함에서 확인된 투표자 수와 개표 용지 수에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 ② 전체적으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이다.
- ③ 전체 투표율이 75%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④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1,2위에 한하여 재투표를 한다.
- ⑤ 단선일 경우, 찬성표 수와 반대표 수의 차가 무효표 수보다 적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8장 당선

제27조 (당선의 기준)

- ①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를 초과 하여야 한다.
- ③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한다.
- ④ 단독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마되었을 경우 전 학기 반대표 및 반부대표, 집행위원장이 논의를 통해 임시 대표자를 결정한다.

제28조 (당선공고)

- 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집행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 ②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 ③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위원은 24시간 이내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반선관위 위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한다.)
- ④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9장 임시 대표자

제26조 (업무 및 권한)

- ① 임시 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을 대표하여 간호대 총투표 투표관리 위원회 위원, 간호대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된다.
- ② 임시 대표자에게는 간학대회, 간운위에서 학년별 각 반당 하나의 발언권이 부여된다. (단,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③ 임시 대표자는 학년별 각 반의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단, 재정을 포함한 필요한 업무는 학년별 각 반 실정에 맞게 임시 대표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7조 (임기)

- ① 임기는 18주차 시작일로부터 다음 학기 새로운 대표자 당선 확정일까지로 한다.
- ② 새로운 대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 대표자가 반 대표자의 업무를 17주차 말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선거)

- ① 새로운 대표자 선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 ② 선거일은 각반 임시 반대표가 결정한다. 단, 최소 3일전에 반 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③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집행위원들이 정한다.

부칙

제1조 (발표)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간운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개정)

- ① 본 개정세칙은 2019년 10월 04일 개정하여 2019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개정세칙은 2020년 06월 02일 개정하여 2020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개정세칙은 2020년 09월 22일 개정하여 2020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신입생 반대표)

- ① 신입생 첫 학기 반대표 선거는 4장 14조 3항에 따라 지정된 집행위원 감독 하에 다음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가) 후보자 등록
 - 나) 출마 소견 발표
 - 다) 투표용지 배부
 - 라) 투표
- ②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해당 학기 17주차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특수 상황)

간호대학 학생회칙 부칙의 제4조 (특수 상황)을 따른다.